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A Study on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곽승진(Seung-Jin Kwak)*
최재황(Jae-Hwang Choi)**
조영주(Young-Joo Cho)***
류희경(Hee-Kyeung Ryu)****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저작권 단체의 디지털자료 납본 의견 |
| II. 연구의 배경 | 1. 음악 저작권 단체 2. 전자책 저작권 단체 및 서비스 업체 3. 시사점 |
| 1. 납본관련 국내 법령 2.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및 보상금 지급 3. 국내의 관련 연구 | V.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1. 정가가 있는 경우 보상 2. 정가가 없는 경우 보상 |
| III. 외국의 디지털자료 납본 정책 1. 주요국의 디지털자료 납본제도 2. 시사점 | VI. 결론 및 제언 |

초 록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납본, 디지털자료, 납본보상금, 납본정책, 납본제도

ABSTRAC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stablishes an Act on Legal Deposit and Use for the Online Digital Products in 2007 and it is preparing an enforc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ate base on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before enforcement of this bill. To reach the goal,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deposit acts on digital products in the world. Also the opinion of main stakeholders in this area was collected such as digital book publishers and music copyright associ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rate base of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Keywords: Legal Deposit, Digital Products, Legal Deposit Reimbursement, Legal Deposit Policy, Legal Deposit System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jkwak@cnu.ac.kr)(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choi@knu.ac.kr)(공동저자)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 사서사무관(chojoo@mct.go.kr)(공동저자)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 사서주무관(nina@nl.go.kr)(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5월 6일 •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I. 서 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의 생산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활성화로 웹문서,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등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는 자료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납본제도는 한계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납본(legal deposit 또는 mandatory deposit)은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다. 납본의 원칙은 국제 조약 및 많은 나라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자료와 달리 디지털자료는 매체 특성으로 인하여 복제 및 대량 배포, 출판물의 변경, 무제한 이용 등이 가능하므로 납본도서관은 납본 받은 디지털자료를 적절한 통제 하에서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웹 사이트의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미국의 MINERVA (Mapping the Internet Electronic Resources Virtual Archive),¹⁾ 호주의 PANDORA (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of Australia)²⁾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캐나다와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국가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는 납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축적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 수집보존 사업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³⁾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온라인으로 출판된 디지털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가 및 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조 제2항에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률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디지털자료 납본법 현황을 분석하고 음악 및 전자책 저작권 관련 단체

1) <<http://lcweb2.loc.gov/cocoon/minerva/html/minerva-home.html>>.

2) <<http://pandora.nla.gov.au/>>.

3) <<http://www.oasis.go.kr>>.

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납본 보상금의 비용 산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디지털자료의 납본보상금 산정기준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디지털자료 유통 현황과 납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자료 납본 및 보상금 체계, 기술적 문제 등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다. 둘째, 한국전자책산업협회 및 전자책 서비스업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디지털자료 유통 및 납본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II. 연구의 배경

1. 납본관련 국내 법령

국내의 납본규정은 1907년 7월 4일 검열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법인 「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법률 제1호) 제10조(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2부를 납부해야 한다)와 제36조(본 법의 규정은 정기발행의 잡지류에도 준용한다)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1952년 4월에 폐지되었다가 1946년 5월 29일에 제정·공포된 「미군정법령」 제88호 Section III(모든 신문이나 기타 정기간행물은 각 호의 1부를 출판일에 라이센싱 당국에 전달 또는 송부해야 한다)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 납본규정은 현재 「도서관법」을 비롯한 10개의 법령에 납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및 보상금 지급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4월 5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납본” 관련 일부 조항 및 서식이 변경[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되었다.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발행, 제작한 자료로,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자료, 시청각자료,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나 비디오디스크 등의 유형물, 점자자료 등의 특수자료 등이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2호)

납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은 납본한 도서 2부에 대하여 1부는 영구보존하고 1부는 관내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정가의 1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본보상금으로 출판사 등 납본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비매품 또는 무가(無價)자료는 ‘정당한 가격’이 없으므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납본자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공공기관, 발행자(출판사 또는 개인), 제작자이며, 납본 시기는 제작 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납본보상금은 판매정가의 1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판사 등 납본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비매품 또는 무가(無價)자료는 ‘정당한 가격’이 없으므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내의 관련 연구

윤희윤은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였다. 납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는 무료납본의 원칙을 적용하되, 고가의 극소수 전자출판물에 한하여 자발적 납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비를 보상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

서혜란은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며,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⁵⁾

한혜영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상의 웹 자원, 전자책 등과 같은 온라인 형식의 전자출판물을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납본제도의 보완과 납본시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납본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자출판물의 납본절차, 접근, 보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전자출판물 납본을 위해 요구되는 전자출판물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과 시스템 구축시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⁶⁾

이처럼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자료 납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납본 제도의 확대 방안, 납본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인쇄도서 등

4)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2), pp.185-207.

5)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pp.373-399.

6) 한혜영,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51-79.

아날로그자료의 납본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의 납본도 대부분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III. 외국의 디지털자료 납본 정책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디지털납본과 관련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미국 등은 개정안을 제출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 국가에 한정하여 주요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요국의 디지털자료 납본제도

가. 캐나다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보존소가 통합되기 이전에 캐나다의 납본은 1985년에 제정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과 1995년도의 국립도서관도서납본규정(National Library Book Deposit Regulations)에 명시되어 있었다. 초기에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에만 적용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상이 확대되어 연속간행물, 녹음자료, 멀티미디어 키트, 마이크로 자료, 비디오를 포함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전자출판물도 포함하였다. 캐나다는 1994년 6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 파이로트 프로젝트(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 EPPP)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 2004년 캐나다도서관및기록보존소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캐나다국립도서관은 자발적 납본 형식으로 전자출판물을 수집하였다.

2004년 캐나다국립도서관과 기록보존소(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가 통합되면서 캐나다도서관및기록보존소법이 제정되었고, 비로소 온라인 전자출판물도 납본대상 자료가 되었다. 이 법에서 ‘출판물(publication)’을 일반 대중 또는 정기구독회원 등이 대가 유무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자료로 정의하면서, 출판물은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쇄물, 온라인 자료 또는 녹음자료 등의 형태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출판물을 발간한 자는 출판 1주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신간 자료 2부를 LAC에 보낼 의무가 있다.

2007년 1월 1일 캐나다의 납본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도 및 출판물을 포함하

도록 확장되었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자료가 납본 법률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LAC는 ‘출판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한다. 납본되는 온라인 출판물의 유형은 도서, 잡지, 연례보고서, 연구 논문, 학술 저널 등이다. 만약 온라인 문서가 HTML, PDF 및 RTF 등 다양한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든 포맷으로 LAC에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된 온라인 출판물은 LAC 서버 및 LAC의 전자 컬렉션⁷⁾에서 처리되는데 이때, 출판물을 간행한 자는 접근 수준에 대하여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 접근으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판물을 다운로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 접근으로 이용자는 출판물의 다운로드, 인쇄 등을 할 수 없으며 오직 LAC 건물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덴마크

덴마크에 납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697년이다. 이후 납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1998년에 발효된 출판물의 저작권 납본에 관한 법률(Act on Copyright Deposit of Published Works)에 이르러 오프라인자료와 정적 온라인자료가 납본 대상이 되었다. 현행 납본법은 인터넷 지원을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이다. 이 법률은 오프라인자료 및 온라인자료를 포함하여 출판물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이전의 법률을 갱신한 것이다. 새로운 조항에는 물리적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의 저작물,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공중의 제공을 위해 제작된 필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전자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은 유무선의 전자통신 인프라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납본 보상금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 제12조에 의해 자료의 사본 요청 및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납본기관이 지급한다.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의 경우, 제15조에 의해 프로그램의 레코딩과 관련된 비용은 납본기관이 지급한다. 공중의 제공을 위해 제작된 필름(films produced with a view to public showing)의 경우, 제16조에 의해 법적으로 납본된 사본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제작자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부장관은 납본기관이 제작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세부 규칙을 정한다.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537년부터 납본법(Montpellier Ordinance)이 제정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납본법으로써 오직 인쇄출판물만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5년에는 축음자료 및 영화 자료를, 1943년, 1975년, 1977년에 몇 차례 법을 개정한 후 1977년부터 사운드, 시청각자료를 출판

7) <www.collectionscanada.gc.ca/electroniccollection>.

자들로부터 납본 반기 시작했다. 현재는 2006년 8월에 제정된 저작권과 관련법규(Droit d'auteur et droits voisins, DADV)에 의해 프랑스의 웹페이지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éque nationale de France, BnF)과 국립영상원(Institute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이 공동으로 프랑스의 웹을 수집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라. 독일

독일의 납본법은 독일국가도서관법이 근거법으로써 196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구법은 폐지되고, 1990년에 독일도서관법령(Gesetz über die Deutsche Bibliothek)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문자로 표현된 모든 자료 중 인쇄자료, 삽화자료, 재생산과정에서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사운드 등이 납본대상이다. ‘인쇄자료’란 물리적 형태로 배포가 가능한 전자출판물, 비도서자료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독일국가도서관과 5개 독일 출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자납본도서관 태스크포스는 1998년부터 네트워크로 배포되는 온라인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태스크포스는 2000년 3월에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수집, 처리절차, 저작권처리방법,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 납본지침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에 독일국가도서관법이 독일국립도서관법령(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으로 개정되면서 오프라인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출판물이 납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어, 납본자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독일국가도서관은 학위논문을 포함한 디지털 출판물을 자발적 납본 형식으로 수집하였다.

마.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납본은 1989년 6월에 제정되어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납본법(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이 법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물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골격을 갖추고 있어서 국립도서관이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처리 가능한 자료 수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처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집 가능한 기타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납본대상 자료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방송자료와 오프라인자료 및 온라인자료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디지털 포맷까지 포함된다. 법률 제8조에는 “정보가 종이에 인쇄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종이에 인쇄한 복제물을 납본해야 한다”라고 하여 주문형(on demand) 출판물도 납본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판자 및 수입자는 이용가능 시점에, 제작자는 제작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판물 2부를 납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6개월 이내에 1부를 제출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제작비용이 고액이어서 납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제작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2005년부터 스냅샷의 보존을 위해 일 년에 한번 노르웨이의 전체 도메인 수집을 실시해 왔다. 2006년부터는 노르웨이의 모든 인터넷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수집했다. 또한 선거, 왕실 결혼식과 같은 사건 기반 수집도 이루어졌다.

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82년에 납본법을 제정하였고, 납본의 대상을 시청각자료, 방송자료 및 디지털자료로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에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납본대상 자료에 대해서 '문헌(document)'과 '매체(medium)'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 해석을 내리고, 특정 매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비교적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 '문헌'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글, 그림, 시각, 청각 및 기타 인지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모든 객체로 정의한다. '매체'는 차후에 읽거나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의도하여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수단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납본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및 CD-ROM 등 정적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 및 재정적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적 전자출판물, 온라인 전자 자료에 대한 납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사. 스웨덴

스웨덴은 17세기부터 납본법에 의해 납본을 시행해 오고 있다. 1978년 납본법에 의해 특정 비디오, 오디오 레코딩 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 후 1995년 납본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자료의 납본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많은 문헌들이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출판되고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스웨덴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스웨덴 국가도서관은 1996년부터 Kulturarw3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출판된 전자 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시키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이다. 자동수집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방법을 채택했다.

2000년부터 납본 대상을 온라인자료로 확대하려는 논의를 시작한 스웨덴 정부는 2002년 5월 8일에 웹 아카이빙을 법제화하는 특별 법령을 선포하였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의해 스웨덴 국가도서관은 인터넷상의 스웨덴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시키

는 것을 허가받았다.

스웨덴은 납본대상에 따라 납본부수 및 시기가 각각 다르다. 인쇄물과 혼합매체는 7부를 3개월 이내에 납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물리적 형태의 전자문현은 문헌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7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쇄물은 2부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비디오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 즉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아. 영국

영국에서는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에 의해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이 국내에서 출판된 인쇄자료를 출판 1개월 내에 한 부씩 납본 받는다. 그 외에 5개의 납본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National Library of Wales, Bodleian Library,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Trinity College Dublin)은 자관의 장서로 필요한 자료의 납본을 출판사에 요구할 수 있고, 출판사들은 해당 자료를 납본할 의무가 있다.

1996년 1월, BL은 납본으로 모든 형태의 비인쇄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문화유산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비인쇄자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료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할 수 있는 출판물, 웹사이트, 유형의 전자출판물 및 마이크로 자료 등이다. 이 제안에 대해 영국 정부는 1997년 2월에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구하는 문건을 발간했다.

1998년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반응을 요약 출판하고, 당사자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인쇄자료에 대한 납본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8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완전한 국가출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납본대상을 온라인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출판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의 완전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임시조치로써 비인쇄출판물의 자발적 납본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출판단체들과 납본도서관들이 배서한 자발적 납본 실행규약이 2000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이 규약에서 자발적 납본의 대상으로 삼는 출판물은 마이크로필름과 오프라인 자료이며, 온라인 자료는 아직은 해결되기 어려운 수집과 보존 문제들 때문에 배제되었다. 이에 영국의 납본도서관과 출판단체들은 정부와 협력해서 자발적 납본에 대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Voluntary Deposit, JCVD)를 구성하고 수년 째 모든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0월 30일에 납본 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이 제정되었고, 오프라인 출판물 및 온라인출판물이 납본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출판물은 본인의 비용으로 1개월 이내에 한 부가 제출되어져야 한다.

자.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납본법은 1977년부터 전자 미디어를 납본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02년 법률에는 CD 및 디스켓과 같은 오프라인 디지털 출판물 및 온라인 출판물도 납본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CD 및 디스켓과 같이 전자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은 3부를 납본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저작물은 암호 및 저작물 접근에 필요한 다른 정보와 함께 납본해야 한다. 아이슬란드 국가도서관은 도서, 신문, 잡지, 팜플릿, 광고, 사운드 레코딩 및 비디오, 아이슬란드의 웹 도메인에서 출판된 모든 저작물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표 1〉 국가별 디지털자료 납본제도 비교

| 구분 | 납본근거법 | 납본대상자료 | 납본기관 | 납본부수 및 시기 | 보상금 | 이용 |
|------|--|---|--------------------------------|---|-----------------------------|---|
| 캐나다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 | 도서, 인쇄물, 온라인자료, 녹음자료 등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 2부, 일주일 이내 | 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접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및 열람 가능 • 제한접근: 다운로드 및 인쇄 불가, LAC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 |
| 덴마크 |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 | 물리적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의 저작물,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공중의 제공을 위해 제작된 필름 | 국가도서관 | 2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 무상 (납본기관이 제작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의 저작물: 납본기관이 지급 •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납본기관이 지급 • 필름: 무상(제작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
| 프랑스 | Droit d'auteur et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2006) | 인쇄출판물, 축음자료 및 영화자료, 사운드, 시청각자료, 웹페이지 | 국가도서관 | | | |
| 독일 |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2006) | 인쇄자료, 삽화자료, 사운드, 온라인 전자 출판물 | 국가도서관 | | 무상 |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 납본지침 제출(2000년) |
| 노르웨이 | 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1989) |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방송자료, 오프라인·온라인자료 | 국립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자, 수입자: 이용 가능 시점에, 제작자는 제작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부 • 방송프로그램: 방송 6개월 이내 1부 | 무상 (고액인 경우 신청에 의해 보상 가능) | |

| | | |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Legal Deposit Act (1997) | 인쇄자료, 시청각 자료, CD-ROM, 온라인 전자자료 | 국립도서관 | | | |
| 스웨덴 | The Legal Deposit Act(1993) | 인쇄물, 오프라인 · 온라인자료 | 국가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과 혼합매체: 3개월 이내에 7부 • 물리적 형태의 전자문 헌 : 문헌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7부 • 증쇄물은 3개월 이내에 2부 • 멀티미디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부 • 비디오: 공중에게 이 용 가능한 날 즉시 1부 | | 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 |
| 영국 | 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 | 인쇄자료, 비인쇄 자료, 온라인자료 | 영국도서관 및 5개 납존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일로부터 1주일 이내 1부 | 무상 | |
| 아이슬랜드 | The Legal Deposit Law (2002) | 전자 미디어, 오 프라인 디지털 출 판물 및 온라인 출판물 | 국가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매체로 출판된 저 작물: 3부 • 온라인 저작물: 암호 및 저작물 접근에 필요 한 정보와 함께 납본 | | |

2. 시사점

새로운 디지털매체의 개발, 전자출판의 출현 및 출판도구로써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국가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이다.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은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전자출판물까지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자료 납본법령과 체제마련을 통해 납본대상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자료 납본대상의 범위이다. 캐나다, 덴마크 등은 납본대상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명시한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수시로 법을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납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디지털자료의 납본부수 및 시기이다. 캐나다는 1주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신간 자료 2부를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기록보존소(LAC)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 국가마다 납본부수와 시기에 대한 규정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납본부수는 출판사의 최소 부담원칙과 국가도서관의 최소 확보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납본 시기는 자료가 출판된 후 즉

시 납본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넷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보상체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상 납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제작비용이 고액이어서 납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제작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이처럼 고가의 극소수 디지털 자료에 한해서는 자발적 납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비를 보상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이다. 캐나다의 전자출판물 파이로트 프로젝트(EPPP), 독일의 전자납본도서관 태스크포스 등 각국에서는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를 마련하기 이전에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진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우선적으로 디지털자료 납본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제도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V. 저작권 단체의 디지털자료 납본 의견

1. 음악저작권 단체

우리나라 음악저작권 관련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⁸⁾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 음악저작권을 신탁 받아 음악사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사용료의 분배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 받은 관리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원 7,026명, 직원 수 160명, 저작권료 사용징수액은 약 677억원, 총 등록된 노래 곡수는 19만 4000곡이다. 저작권료 징수는 사용하는 방법과 장소에 따라 유무선방송, 전송, 노래방, 음반사용, 광고, 대여, 출판 및 외국의 사용 등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저작권료 징수부분은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전송사용료가 141억원으로 노래방(94억원), 음반사용(91억원)보다 많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총 노래 곡수는 약 19만 4000여곡으로 회원 평균 27.7곡이다. 그러나 현재 비인기곡 등 디지털로 변환되어 유통되는 노래 곡수는 이보다 적으나 mp3, wav, snd, au, ra 등 다양한 압축 포맷과 서비스 회사가 여러 곳이어서 디지털음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지부관리부, 사업부 전송팀) 관계자는 디지털음원 납본도 음반이나 CD 등 아날로그 자료 납본과 같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현재 디지털음원의 한 곡 당 통산

8) <<http://www.komca.or.kr/>>.

이용 가격은 500원이며, 음악의 품질이나 플레이 시간, 유명세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2007년 디지털음원의 전송사용료 수입 예상액은 약 2,000억 원이며, 배분 기준 및 예상금액은 <표 2>와 같다.

<표 2> 디지털음원의 전송사용료 현황

| 구 분 | 비율(%) | 예상금액(억원) | 비 고 |
|---------|-------|----------|----------|
| 음악저작권협회 | 9 | 180 | 2007년 목표 |
| 음원제작자 | 40 | 800 | |
| 실연자 | 5 | 100 | |
| 서비스사업자 | 46 | 920 | |
| 계 | 100 | 2,000 | |

2. 전자책 저작권 단체 및 서비스 업체

우리나라 출판사는 약 2만개이며 100여개 출판사가 출판의 80~90%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책 제작 및 서비스업체는 10여개이며 전자책 포맷 또한 표준화된 것이 없는 실정으로 북토피아, 바로북, 교보문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편이다. 국내 전자책 생산 및 유통은 종이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량은 중복 제작을 포함하면 약 25~30만권 정도이고, 중복을 제외하면 약 12~13만권으로 최소 10만권 이상으로 추정된다. 처음부터 전자책으로만 제작되는 전자책은 약 1만권정도이며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전자책의 경우 납본의 주체가 출판사인지, 저자인지, 전자책 서비스업체인지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전자책 납본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자, 출판사, 전자책 서비스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활한 전자책 납본을 위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하겠다.

전자책 유통은 대부분 B2C(business-to-consumer) 형태이며 전자책 서비스업체와 개인간 거래보다 도서관의 구매가 더 많다. 개인 구매의 경우 보통 정가의 40~60%에서 거래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전자책은 기증분을 제외할 경우 권당 보통 22,500원(5 user 기준) 정도이다. 전자책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 유통 사례는 <표 3>과 같다.

전자책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종이책과 같이 납본된 전자책이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보상에 동의하는 편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이후 이용될 경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납본에 대한 보상금은 개인과의 거래 또는 일반도서관이 계약하는 가격체계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9) 2007년 12월 2일(월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에서 면담.

10) 2007년 12월 12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전자책산업협회 옆 민들레영토 홍대점에서 면담.

〈표 3〉 전자책의 도서관 유통 현황

| 구 분 | 수 량 | 금 액 | 평균가 | 비 고 |
|------|--------|---------|---------|---|
| A도서관 | 6,200권 | 9,800만원 | 15,8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구매를 한 종수는 70~80%이며 나머지는 기증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 것도 포함됨 • 단일 계약이 아니고 2007년에 여러 차례 나누어 계약된 것을 합산한 것임 |
| B도서관 | 7,500권 | 9,700만원 | 13,000원 | |

3. 시사점

음악자료의 경우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음원의 디지털제작을 하고 있으며, 전송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담당하고 있고 사용료책정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승인하는 등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는 음악자료의 원활한 유통과 서비스를 위하여 원스톱체계 마련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디지털 음악자료 납본에 대한 단일한 의견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저작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전자책 이해당사자의 경우 납본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는 저자, 출판사, 전자책 제작 및 서비스 업체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에 대한 가격의 책정과 납본된 전자책의 도서관 관외 일반이용자의 이용을 위한 B2C 유통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V.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보상은 도서자료 납본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법령은 인쇄도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납본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의 납본도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납본에 소요되는 비용도 납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무상납본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 등 납본을 위한 사본제작비용이 고액이어서 납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제작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자료의 자발적 납본을 촉진하고, 보존만을 위한 납본에 한정되지 않는 이상 납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정가가 있는 경우의 납본에 대한 보상과 정가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절한 납본보상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은 저작자 또는 출판자가 도서 등의 출판물(제작물) 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판된 도서의 2부에 대한 손실분을 감안하여 영구보존하는 1부 이외에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1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본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대부분 납본에 대해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 등의 제작 원가에 납본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개인, 도서관, 다른 주체가 입수하는 출판물의 가격에는 이미 국가도서관에 납본하는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단한다.¹¹⁾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국가 디지털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저작자 또는 출판자의 납본행위가 전송 또는 복제로 이루어지므로 순 손실은 발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납본대상에 상업적인 판매 자료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전자출판물의 규정(형태, 내용, 기록사항 등)을 참고하여 유통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1. 정가가 있는 경우의 보상

온라인디지털자료 중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전자출판물의 규정(형태, 내용, 기록사항 등)을 참고하여 납본대상 자료를 규정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정가가 있는 경우 보존을 위한 납본과 더불어 관내 이용을 전제로 납본을 할 경우 정가보상이나 적정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납본도서관이 예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출판자의 임의적인 가격으로 판단될 경우 보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중에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이 미결정된 자료의 경우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자료의 납본 보상 방안은 <표 4>와 같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디지털자료를 납본자가 접근 수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하나는 공개 접근으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 제한으로 이용자는 다운로드, 인쇄 등을 할 수 없으며 오직 도서관 건물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전자책, MP3 등 개별 콘텐츠 당 정가가격 정책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학술DB나 이미지DB 등의 통합 패키지형태로 고액이나 임의적인 가격 책정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디지털자료는 개별 콘텐츠별로 각각의 이용보상을 위해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패키지 형태의 B2G(business-to-government)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1)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6권, 제2호(2002), p.202.

〈표 4〉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방안

| 구 분 | 보존 및 이용 | 보상여부 | 비 고 |
|---------------------------|----------|--------------------------------|-------------------------|
| 상업적 판매 (정가책정) | 보존만 할 경우 | 보상안함 | 전자책, MP3 등 개별 콘텐트 형태 |
| | 관내 이용 허락 | 정가 또는 직정가 보상 | |
| 상업적 판매 (고액 및 임의적 가격책정) | 보존만 할 경우 | 보상안함 | 학술DB, 이미지DB 등 패키지 형태 |
| | 관내 이용 허락 |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패킷 또는 유통가격) | |
| 완전공개, 공표된 비매품 | 보존만 할 경우 | 보상안함 | 일반 웹사이트, UCC 등 |
| | 관내 이용 허락 | 보상안함 | |
| 가격 미결정 자료 | 보존만 할 경우 | 보상안함 | 미공개, 제한적 공개 |
| | 관내 이용 허락 |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패킷 또는 유통가격) | |

2. 정가가 없는 경우의 보상

정가가 없는 경우 첫째,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의 경우 관내이용에 있어서 보상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고, 가격 미결정자료(미공개, 제한적 공개)의 경우 관내이용에 있어서 추후 보상기준(패킷이나 일반적 유통단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가가 없는 경우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미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웹로봇을 사용한 수집을 통해 보존 및 관내·외 이용에 있어 보상이 불필요하므로 보상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이 저작자에게 접근 수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된 자료 이외에도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은 자료(invisible web)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웹에서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는 자료를 보통 100~500배 이상의 크기로 추정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의 경우에도 저작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전공개 및 제한적 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디지털 납본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미공개인 자료의 경우 임시 수집을 통해 보존을 진행하고 관내 이용에 있어서는 차후에 가격이 결정되고 공개가 되는 시점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디지털 정보환경의 수많은 정보 자료 중에서 웹문서,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 디지털자료를 접하지 않고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발표에 따르면 1998년에

존재했던 인터넷 사이트 중 44%가 1년 후에 사라졌으며 2002년 인터넷 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44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¹²⁾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자료 납본을 위한 인터넷 자원 등의 수집과 보존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국가의 디지털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주목적 이 있다. 도서 등의 납본과 달리 디지털자료는 저작자 또는 출판자의 납본행위가 전송 또는 복제로 이루어지므로 「도서관법」에 의한 현행 납본제도(2부 제출)와는 달리 순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납본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손실 가격보상이라는 기준의 납본 보상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을 분석하고, 저작권 관련 단체의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방안의 기초 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디지털자료의 납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상 납본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사본제작비용이 고액이어서 납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제작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자료의 경우 자발적 납본을 촉진하고 보존만을 위한 납본에 한정되지 않는 이상 납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관련 연구 결과들은 전통적 매체에 비해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 따라서 납본 대상 자료를 모든 형태의 디지털자료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납본의 주관 기관은 디지털자료 납본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디지털자료의 범위, 수집과 처리절차, 보상 및 저작권 처리방법,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하였고, 시범적으로 일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디지털자료 납본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 시행 이후의 차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http://www.loc.gov/acq/devpol/webarchive.html>>.

13) Adrienne Muir and Charles Oppenheim. 2001. "Legal Deposit," in Report on Developments World-Wide on National Information Policy [online]. Loughborough, Dept. of Information Science, Loughborough University. [cited 2007. 7. 21]. <http://www.la-hq.org.uk/directory/prof_issues/nip/>.

참 고 문 헌

-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pp.373-399.
- 선명순. *한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2003.
-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2), pp.185-207.
- 이치주.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p.359-386.
- 정현준. “영화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19권, 제3호(2007), pp.24-34.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인용 2007. 12. 18].
- 한혜영.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51-79.
-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Home Page. <<http://www.bnf.fr/default.htm>> [cited 2007. 11. 24].
- German National Library Home Page. <<http://www.ddb.de/eng/index.htm>> [cited 2007. 11. 24].
- IFLA,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CLM). *The IFLA Position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2000.
<<http://www.ifla.org/III/clm/p1/pos-dig.htm>> [cited 2007. 12. 13].
- Koninklijke Bibliotheek Home Page. <<http://www.kb.nl/index-en.html>> [cited 2007. 11. 20].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EPPP) : Final Report.”
Ottawa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1996.
<<http://www.collectionscanada.gc.ca/obj/p4/f2/e-report.pdf>> [cited 2007. 11. 19].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Home Page.
<<http://www.collectionscanada.ca/>> [cited 2007. 11. 20].
- Library of Congress Home Page. <<http://www.loc.gov/index.html>> [cited 2007. 11. 24].
- Muir, Adrienne and Charles Oppenheim. Legal Deposit, In Report on Developments Worldwide on National Information Policy [online]. Loughborough, Dept. of Information Science, Loughborough University, 2001.
<http://www.la-hq.org.uk/directory/prof_issues/nip/> [cited 2007. 7. 21].
-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Home Page.
<<http://www.nlsa.ac.za/NLSA/>> [cited 2007. 11. 24].
- National Library of Sweden Home Page.

- 〈<http://www.kb.se/ENG/kbstart.htm>〉 [cited 2007. 11. 24].
Preserving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Home Page.
〈<http://www.nla.gov.au/padi/index.html>〉 [cited 2007. 11. 24].
Seadle, Michael. "Copyright in the Networked World : Digital Legal Deposit." *Library Hi Tech*, Vol.19, No.3(2001), pp.299-303.
The British Library Home Page. 〈<http://www.bl.uk/>〉 [cited 2007. 11. 24].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Home Page.
〈<http://www.nationallibrary.fi/>〉 [cited 2007. 11. 24].
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Home Page.
〈<http://www.nb.no/english>〉 [cited 2007. 11. 24].
The Royal Library Home Page. 〈<http://www.kb.dk/en/>〉 [cited 2007. 11. 24].
Verheul, I. "Networking for Digital Preservation : Current Practice in 15 National Libraries." *IFLA Publications*, 2006. p.119.